##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방미숙 의원

발의일 : 2022. 1.

## 1. 제안이유

○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함 (안 제5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소병찬)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장애인・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, 현행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비용의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